

도축장 등 렘피스킨 방역관리 개선사항

- 제2종 가축전염병 전환 도축장 등 의심 임상축 가축처분 유예 -

2026. 9.



농림축산식품부
구 제 역 방 역 과

도축장 등 림피스킨 방역관리 개선사항

- ◆ 림피스킨의 2종 가축전염병 전환(26.10.1)에 따른 방역관리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여 지방정부·농가 등의 현장 혼선 최소화 추진
 - * 농장 외 도축장, 가축시장 등에서 의심 임상축 발견 시 방역관리, 진단체계 개편 등

1. 현황 및 배경

- (현황) 올해는 7.10일 전북 순창 첫 발생 이후 현재까지 15건* 발생
 - * 전남 7건(신안2, 무안2, 고흥2, 해남), 충남5(서산3, 보령, 태안), 전북4(익산2, 순창)
- '23.10월 국내 첫 발생 후 9개 시·도, 48개 시·군에서 총 146건* 발생
 - * (23년) 107건, (24년) 24건, (25년) 비발생, (26년) 15건
- (대응) 고위험 40개 시군 소규모농가 일제접종(6월) 및 자율희망 접종 농가 백신공급, 위험도 기반 예찰·방제 조치 및 농가 자율방역 확대 등
 - 전북 순창 첫 발생에 이후, 위험정보 발령 및 제2종 가축전염병(적극행정 위원회 심의, 26.5.17)에 준해 지방정부 중심으로 방역조치 적용 중임
 - * 발생농장 이동제한 및 양성축 농장 내 격리(증상축과 증상없는 개체 구분), 가축처분 최대 70일 유예하고 28일 경과 후 매주 감염축에 대한 정밀검사(이상이 없으면 해제)
- (배경) 최근 도축장 등에서 피부결절 등 림피스킨 의심 임상축이 신고·검사없이 출하되는 사례가 반복 확인*되어 방역관리 개선 필요
 - * (도축장 4건) 전북 익산 3건(폐기1, 농장이송2), 충북 음성 1건(농장이송)
- 도축장 등 농장 외 장소에서 양성축(의심임상축 포함) 확인 시에도 2종 가축전염병에 준한 방역조치* 확대 적용 필요
 - * 가축처분 유예 및 출하농장을 격리·이동제한 이행장소로 지정·관리(방역조치 철저)
- 또한, 신속한 검사 및 방역관리 효율성 강화를 위해 시·도 가축방역 기관에서 검사·진단할 수 있도록 진단체계 개편 필요
 - * 예산, 확진키트 배부 등 현장상황을 반영해 본소, 발생시도 우선에서 추진

2. 주요 방역관리

◆ 도축장, 가축시장, 농장 등 임상축 방역관리 강화 및 검사체계 개선

① (도축장) 운영자가 의심 임상축을 도축장 내 반입 제한 또는 격리 후 검사관의 개체검사 결과 “임상축” 판단 시 기존 조치 유지(26.8.~)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임상축은 도축금지 대상으로 검사관의 판단 하에 농장으로 이송 및 농장 관할 시군·가축방역기관 통보
- 부득이, 검사를 위해 도축장 내 격리·계류 명령* 후 시료채취·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축은 출하농장으로 이송하고, 음성축은 도축 가능(26.9.)**

* 농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는 격리·계류 명령 후 검사 과정에서 폐사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 가능, 검사결과 양성축 확인 시에는 미신고 등 벌칙조항 적용

** 시도 가축방역기관 검사는 검역본부 세부 이관계획에 따름. 다만 부득이 이관 전에 검사 등이 필요할 경우 검역본부와 사전협의 후 인편 등을 통해 직접 의뢰 가능

◇ 도축장 내 양성축 확인 시, 방역조치 준수하여 출하농장에서 격리·이동제한 후 방역조치하고 도축 과정에서 확인 시는 도체 폐기 조치, 소독 강화

② (가축시장) 운영자(농협)는 림피스킨 위험시기*에 전국 우시장(87개소)에 수의사를 배치·운영하여 거래 전 임상검사 강화 추진

* 림피스킨 위험경보 단계 : 농장 발생 또는 매개곤충에서 LSD 병원체 분리 등

- 의심 임상축 발견 시 별도 격리, 거래금지 및 소독·방제 후 이송* 안내

* 농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가축방역기관 등에 사전 통보(필요 시 신고 병행)

◇ 농장 외 축산관계시설에서 임상축(의심축 포함)이 거래되지 않도록 임상검사 강화 및 신고·이송절차 등 농가 사전 홍보 강화 병행

③ (농장) 발생농장의 양성축 및 음성 동거축 관리체계 명확화

- 가축처분 유예 명령기간 내 양성축이 검사과정에서 폐사한 경우 보상 가능
- 양성축과 별도 격리된 음성 동거축은 28일 경과한 후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도축장 출하목적으로 이동 허용

◇ 농장 단계에서 양성축 유예기간 내 폐사·보상, 음성축 출하기준 등을 명확히하여 의심 임상축이 신고·검사 후 출하·거래되도록 홍보 강화

④ (진단) 기존 럼피스킨 검사체계(정밀진단검사기관 지정·운영)를 2종에 준해 시·도 가축방역기관(본소 우선)에서 검사하도록 진단 체계 개편(26.9, 검역본부)

- 검사시간·인력 및 현장 방역관리 상황 등을 감안해 시·도로 검사·진단권한 신속 이관, 도축장, 격리·유예개체 검사 등에 효율적 대응

※ 유전자(아외주, 백신주) 검출 시료는 즉시 검역본부 송부, 유전자 및 생물학적 분석 병행

◇ 확진용 유전자 진단키트 유보분을 발생 시·도부터 우선 배정하고, 교육·훈련, 사후관리(정도관리) 등 세부 관리방안 마련(검역본부, 26.9월)

⑤ (홍보) “임상축은 출하농장에서 격리·이동제한”, 출하전 신고·검사 안내*

* 방역본부(알림톡), 생산자단체(단톡방, 지부), 축산시설(거래농가, 운송업자) 등

- 주요 내용 : ①의심 임상축 신고·검사 후 거래·출하, ②농장 외 시설에서 양성축(의심 임상축 포함) 확인 시 방역조치 후 농장으로 이송 및 ③미신고* 벌칙 적용, ④이송 시 소독조치 후 농장내 격리·정밀검사 실시, ⑤매개체 방제 및 기본방역수칙 등 반복 교육·홍보로 자율 책임방역 강화

* 미신고로 인한 이송비용, 처벌 등 농가 손실이 없도록 임상증상 신고 등 홍보 강화

⑥ (고시) '럼피스킨 방역실시요령 고시(예비심사 중)'는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2종 전환에 따른 일부 개선사항*은 신속하게 반영 추진

* 농장 외 축산관계시설에서 임상축 확인 시 방역조치, 진단체계 개편 등

3. 향후계획

□ 주요 개선사항 등 관련 고시 제·개정을 통해 신속 반영 및 홍보 강화

□ 럼피스킨 진단체계 개편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추진(검역본부)

- 지방정부는 진단인력·장비·시설 및 발생보고 등 자체 검사체계* 사전 준비

* 발생농장 환경검사, 매개체 채집·검사 및 유예개체 검사 등을 포함

도축장 렘피스킨 의심 임상축 관리요령

도축장에서 의심 임상축을 확인한 경우, 도축금지 후 출하농가 이송 또는 도축장 내 검사 절차에 따라 방역조치



핵심 메시지



의심 임상축은 반드시 신고·검사 후 출하



도축장에서 확인 시 도축금지 후 방역조치



음성은 허용, 양성은 농장 방역관리 절차로 연계

! 도축장 등 농장 외 축산관계시설에서 의심 임상축이 확인될 경우, 출하농장, 가축운송업자 등 미신고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5조의2, 제57조)

가축의 건강, 국민의 안전을 지킵니다.

□ 추진 배경

- (발생현황) '26.7월부터 현재까지 총 15건(전남7, 충남5, 전북3) 발생
- (진단체계) 시도 가축방역기관^{1차} → 검역본부·정밀진단기관^{2차}
- (문제점) 가축처분 유예 개체, 환경검사, 도축장* 등 검사물량이 검역본부에 집중, 2단계 검사체계로 정밀진단 확진 지연 우려
 * 진단체계 개편 전에 도축장 검사시료 의뢰 시 사전협의 후 검역본부로 직접 의뢰
- (필요성) 럼피스킨 가축전염병 관리등급이 2종으로 하향 조정, 정밀진단기관(경기, 충남) 추가 지정·운영이 어려워 검사체계 전환 필요

□ 진단체계 개편

- ① (진단체계) 시·도 가축방역기관(본소)로 검사권한 이관·변경(26.9.~)
 - 진단인력·시설, 시료 취급관리 등을 감안해 본소 위주로 우선 추진
 - 확진용 유전자 진단키트 유보분을 발생 시도 위주로 우선 배정하고 진단인력 대상 교육(온라인, 필요시 실습 교육), 정도관리 등 병행 추진
- ② (관련규정) 현행 '럼피스킨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영지침(검역본부 훈령 제147호)'을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고시)'으로 통합 관리
 - '럼피스킨 방역실시요령' 개정 시 검사기관 변경사항 반영 예정
- ③ (추가분석) 럼피스킨 유전자(야외주 및 백신주) 검출시료는 즉시 검역본부로 송부하고 검역본부에서는 유전자 및 생물학적 분석 진행 및 결과 공유

□ 향후 계획

- 시·도 가축방역기관 대상 진단교육, 정도관리, 진단키트 배정 등을 포함한 세부계획 알림('26.9월)

□ 배경

- 가축시장 등 거래를 통해 도축장 출하되는 사례 등이 확인됨에 따라 위험시기* 전국 우시장에 수의사를 통한 거래전 임상검사 강화

* 림피스킨 위험경보 단계 : 농장발생 또는 매개곤충에서 LSD 병원체 분리 등

□ 현황

- 전국 가축시장 현황 : 총 87개소
 - * 경기7, 강원9, 충북8, 충남9, 전북9, 전남15, 경북14, 경남 14, 제주2
- 전국 가축시장 거래물량 : 최근 5년 평균 485,529두/년 거래

□ 주요 방역대책

- 가축 거래 전 수의사 배치·운영 및 임상검사 강화
 - 수의사(77개소) : 자체 동물병원(48), 지자체공수의(8), 외부위탁(31)
 - ※ 외부위탁, 지자체 공수의 배치 가축시장의 경우, 공수의사 지원 등 협조 필요
 - 임상증상 소 발견 시 격리, 거래금지 및 소독·방제 후 농가이송*
 - * 농장소재지 관할 시군 및 가축방역기관에 사전 연락 및 필요시 신고 병행
 - 의심 임상축 발견을 대비하여 격리사 별도 운영 검토
- 가축시장 소독·방제 및 홍보 철저
 - 차량·사람 등 운영 철저, 개장 전·후 시장 전체 소독 실시
 - 공방단 가축시장 주변 소독(주 1~2회), 공수의사 배치 등 지방정부 협조

□ 향후 계획

- 조합 홈페이지, 출하농가 등 SNS 발송 등 사전 안내* 강화
 - * 의심 임상축 가축시장 반입금지(농장 이송), 미신고 처벌조항 등 현수막 부착

□ **현황 및 문제점**

- 침파리 등 매개곤충 예찰 결과 분석*을 통해 럼피스킨 위험주의보 발령으로 농가 자체 방제 활동 등 사전 예방 활동 강화
 - * 매개곤충에서 항원 검출, 침파리가 공중포집기(최소1마리) 또는 농가(평균 20마리) 이상 채집
- '25년 예찰 결과 매개곤충 41,993마리를 채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령 기준 미충족으로 농가의 방제활동 강화 등을 위한 주의보 미발령
 - 소(牛) 사육농가의 경각심 강화를 위해 발령 기준 개선 필요

□ **럼피스킨 위험주의보 발령 개선안**

- 침파리 등 매개곤충 예찰 결과를 활용해 **2단계(주의보, 경보)**로 위험 주의보 발령체계를 개편하고, 농가 교육·홍보 강화 추진
 - * 질병관리청 일본뇌염 경보체계를 참고하되, 외래 유입질병인 LSD의 특성 반영

【 럼피스킨 주의보 및 경보 기준 】

(럼피스킨 주의보) : 선제적 방역 강화

- ① 공중포집기 침파리 최초 채집 시
- ② 최근 3개월간 주변국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하고, 매개곤충 예찰 결과 **2주 단위 채집량 평균이 40% 이상**(향후 예찰 결과 분석을 통해 변동 가능) **증가한 경우**

* 예시 : (6월 1주차) 3,000마리 채집 → (6월 3주차) 4,500마리 채집(50%↑), 발령 조건 충족

(럼피스킨 경보) : 즉각적인 방역 대응

- ① 매개곤충으로부터 LSD 병원체가 분리 또는 유전자가 검출된 경우
- ② 사육 소(牛)에서 LSD가 발생한 경우

□ **럼피스킨 위험주의보 · 경보 발령에 따른 주요 방역조치**

구분	주의보	경보
방역 조치	• 백신접종 홍보, 방충망·포충등 점검 • 농장 주변 제초·살충, 물웅덩이 제거 • 분뇨장·퇴비장 방제	• 농가 주변 집중 방제 - 분뇨·퇴비장 주기적 방제, 축사주변 병해충 방제 램프·방충망 등 운영, 연무소독 등 • 백신미접종 농가 접종 독려 - 임상예찰 강화, 자율 백신접종 확인 등

□ 도축금지 및 계류장 검사

< 축산물위생관리법 >

제11조(가축의 검사)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도살·처리하는 가축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30.>

<시행규칙 >

제8조(가축 및 식육의 검사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이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도축검사신청서를 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도축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관은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도축장에서 처리하는 가축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축업의 영업자로 하여금 검사를 받으려는 가축을 도축장의 계류장에 일정기간 계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① 검사관은 해당 도축장의 계류시설·냉장시설 등 도축처리능력을 고려하여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9.>

② 삭제 <2014. 2. 19.>

③ 제1항에 따른 가축 및 그 식육검사의 항목·방법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별표3 >

1. 도축하는 가축의 검사기준,

가. 소·말(당나귀 포함)·양·돼지 등 포유류

3) 개체별 검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가) 가축의 자세·거동·영양상태·호흡상태 등을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맥박·체온을 측정한다.

나) 피부와 털의 상태를 확인한다.

다) 필요한 경우 눈꺼풀·비강·구강·항문·생식기·직장검사를 실시한다

4) 검사관은 생체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가축에 대하여는 격리장에서 일정시간 이상 계류시킨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도축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 검사관은 가축의 검사 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도축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1) 다음의 가축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가) 우역(牛疫)·우폐역(牛肺疫)·구제역(口蹄疫)·탄저(炭疽)·기종저(氣腫疽)·블루텅병·리프트게곡열·림프스킨병·가성우역(假性牛疫)·소유행열·결핵병(結核病)·브루셀라병·요네병(전신증상을 나타낸 것만 해당한다) ~

□ 신고 및 병성감정 및 격리·이동제한 등

< 가축전염병예방법 >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이하 "신고대상 가축"이라 한다)의 소유자등, 신고대상 가축에 대하여 사육계약을 체결한 축산계열화 사업자, 신고대상 가축을 진단하거나 검안(檢案)한 수의사, 신고대상 가축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또는 신고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의 농장을 방문한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신고대상 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이하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2. 가축의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간이진단키트 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② 신고대상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받은 수의사등은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검사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의사등과 그 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은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철도,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교통수단으로 가축을 운송하는 자(이하 "가축운송업자"라 한다)는 운송 중의 가축이 대상 가축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가축의 출발지 또는 도착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12조(병성감정 등) ①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한 자 또는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해당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나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가까워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 또는 해당 가축의 사육 장소에 함께 있어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오염우려물품"이라 한다)을 격리·억류하거나 해당 가축사육시설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①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 사체의 소유자등은 가축방역관의 지시 없이는 가축의 사체를 이동·해체·매몰·화학적 처리 또는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불합격 가축·축산물의 처리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

제19조(검사에 불합격한 가축·축산물의 처리) ① 법 제18조에 따라 영업자는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2.>

1. 소각·매물 등의 방법에 의한 폐기
 2.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
 3. 삭제 <2016. 1. 22.>
- ② 검사불합격품을 소각·매물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려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별표2와 같다.
- ③ 검사불합격품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별표2 > 검사불합격품의 폐기처리방법과 기준(제19조제2항 관련)

1. 검사불합격품 등의 처리
 - 가. 법 제11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에 대해서는 가축의 머리 또는 몸통에 육안으로 잘 보일 수 있도록 적색 또는 청색으로 x표시를 하여야 한다.
 - 나. 법 제11조에 따른 검사 대상 가축이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어 불합격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상금

< 가축전염병예방법 >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면역표시, 약물목록, 면역요법,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사산되거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3.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 3의2.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
 4.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물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물건의 소유자
 5. 제11조제1항에 따라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나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한 자 중에서 병성감정 실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되어 이동이 제한된 자
 6. 제27조에 따라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의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
- ② 제21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된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청소·소독·환경정비

- 축사 외부 소독·방제 실시, 축사 내부와 분뇨* 등 주기적 소독,
 - * 축사 내 분뇨를 예비 소독한 후 주기적 수거하여 매개곤충이 서식하지 않도록 관리 등
- 축산 내·외부 우거진 풀(제초)이나 고인물 등 매개체 서식환경 제거

② 해충 방제(수시)

- (기본수칙) 주변 양봉농가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하되 가급적 이른 오전이나 늦은 오후 시간대에 농장 내부를 중심으로 해충 방제 실시
 - (젓소농장) 살충제 대신 물리적 방제 방법(끈끈이, 포집유도장비 등)을 우선 사용하고, 원유 안전관리 10대 수칙 준수
 - * 불가피하게 살충제를 사용한 경우, 휴약기간 등 반드시 준수
 - (한·육우 농장) 축사 내·외부용 살충제(축체 비접촉)를 우선 사용
 - * 축체 적용 살충제 사용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개체별 휴약기간 관리 철저

< 모기 등 질병 매개체 방제 기본방향 >

- 가능한 지속성 있는 물리적 방제법(서식처 제거)을 우선 실시
-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된 제품의 용법·용량 준수
- 종합적 방제 실시(물리적, 생물학적, 화학적 방제법 등의 방법 중 둘 이상을 동시에 적용)

③ 임상관찰 및

- 농장주(관리자 포함)는 사육 중인 가축에 대해 고열, 과도한 침흘림, 피부결절, 유량감소 등 임상관찰 후 이상 시 방역기관 즉시
 - * 도축장, 가축시장 등에서 의심 임상축은 농장(격리·이동장소)으로 이송·검사 등

④ 출입통제·소독

- 출입구에 차단바, 출입통제 안내판 등 사람·차량 통제 및 소독 등

참고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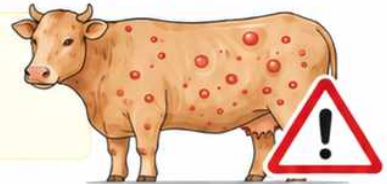
(홍보) 대상 가축 의무 안내(안)

럼피스킨 등 신고대상가축 신고의무 및 벌칙 안내

의심축은 신고·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출하·거래·이동

최근 도축장 등에서 럼피스킨 의심 임상축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소 사육농가, 가축운송업자 등 축산관계자는 신고대상가축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및 검사 없이 도축장·가축시장·다른 농장으로 출하·거래·이동해서는 안 됩니다.



1 농가의 신고의무

- 피부결절, 발열, 식욕부진, 유량감소 등 럼피스킨 의심 임상증상이 있는 소를 발견한 경우 즉시 관할 시·군 또는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 신고 후 농장 내 별도 장소에 격리하고,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반드시 받는다
-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도축장 출하, 가축시장 출하, 거래, 다른 농장으로 이동 가능

2 의심축 관리 원칙



※ 검사결과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도축장·가축시장·다른 농장으로 출하·거래·이동 금지

3 가축운송업자의 신고의무

- 운송 전 가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은 운송하지 않도록 농가에 안내
- 운송 중 신고대상가축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기관에 신고
- 의심축을 검사 없이 목적지까지 계속 운송하지 말고, 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



4 도축장·가축시장·농장 간 이동 관리

A. 도축장



- 의심축 확인 시 반입·도축 제한
- 관할기관 신고 후 출하농장으로 반송
- 농장 내 격리·이동제한 및 정밀검사 실시

B. 가축시장



- 의심축 확인 시 반입·거래 중단
- 다른 가축과 분리 후 신고
- 출하농장 등으로 반송하여 격리·정밀검사

C. 농장 간 이동



- 의심축은 검사 없이 다른 농장으로 이동 금지
- 반드시 신고 후 검사결과 확인



운송차량, 계류시설 등은 세척·소독 실시

5 벌칙조항 안내 (가축전염병예방법)

농가(소유자 등)의 신고의무 위반

신고대상가축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5조의2]

가축운송업자의 신고의무 위반

운송 중 신고대상가축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7조]

주의

의심축을 숨기거나 신고 없이 이동시키는 행위는 가축전염병 확산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6 핵심 당부사항

- ✓ 의심증상이 있는 소는 신고 없이 출하·거래·이동하지 마십시오.
- ✓ 농장단계에서 신고 후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출하하십시오.
- ✓ 럼피스킨 차단은 농가와 가축운송업자 등 축산관계자의 정확한 신고와 협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7 신고 방법

관할 시·군 또는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



전화 신고
1588-4060 / 1588-9060



관할 시·군 또는
가축방역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참고 4

(홍보) 매개곤충 방제 및 백신접종 방법

럼피스킨 매개곤충 방제와 백신접종으로 우리 소 지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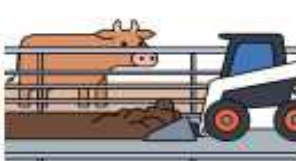


럼피스킨 예방 위한 방역 절차 및 매개곤충 방제요령

농가 및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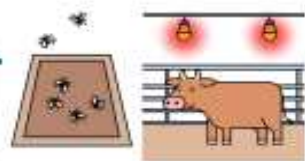
축사 내·외부 수시로 청소



분뇨는 정기적·수시로 제거



주변 매개곤충 서식지(물웅덩이 등) 제거, 방제



곤곤이 트랩 및 유충덫프 활용

축산차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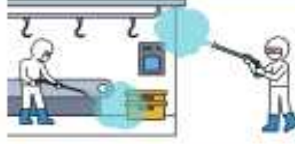


차량 내·외부 세척소독으로 매개곤충 부착 방지



소 운반 시 빗질·세척 등 물리적 방법으로 매개곤충 제거

도축장, 사료공장, 분뇨처리 시설 등



시설 내·외부 수시로 방제



전문 방제업체에 구서·구충 및 파리·모기 등 방제 위탁

※ 약제 분무는 가축과 접촉하지 않는 장소에 한정

올바른 방제약제 사용 요령 및 관리 방법

- 살충제는 제품별 사용설명서 꼭 숙지하여 사용
- 살충제는 가축의 입에 닿지 않도록 주의
- 살충제는 통풍이 잘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휘발성분이 많고 햇빛에 의해 변질되어 살충효과 떨어질 수 있음)
- 쫓소 농가는 가급적 물리적 방법으로 매개곤충 제거
- 살충제를 성분별(유기인계, 카바아이트계, 피레스로이드계 등)로 변갈아 가며 사용

※ 살충제 사용요령의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참고(www.qia.go.kr > 동물방역 > 축종별가축질병)

럼피스킨 백신접종 안심하고 이렇게 접종 하세요

백신 접종! 이렇게!



- 잘 고정하여 한손으로 목부위를 들춰 잡고 가축 밑에 주사เข็ม 들어가기로 각도를 조절하여 주사
- 구제역과 럼피스킨 백신을 같은 주사기에 혼합해서는 안되며, 별도의 주사기와 바늘을 사용해야 함
- 럼피스킨 백신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한 목의 반대편에 접종
- 백신종류에 따라 1ml 또는 2ml 피하접종(제조사별 설명서 반드시 숙지)

백신 접종 후 사육관리

- 세계 보건기구에 따르면 럼피스킨 예방 백신접종이 핵심이며, 발열, 유량감소, 접종부위 결절 등 부작용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맞을 후 사라짐
- 접종 후 고열, 식욕부진 등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필요 시 스트레스 완화제 투여 ***수의사 상담 권고**
- 양질의 사료와 충분한 물 급여, 추위나 고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소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세심한 사육관리

※ 의심 가축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8-9060(농림축산검역본부) 1588-4060(지방자치단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참고 5

(홍보) 기본방역 및 임상증상

럼피스킨으로부터 우리 소 보호하고 청정한 축산농장 만들기



소 농장 기본 방역 지키기

올바른 백신접종과 출입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내·외부 소독 및 차단방역으로 우리의 소중한 가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농장 출입 시



농장 입구 외부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및 출입통제



농장 출입차량 소독



농장 출입자 소독
(목하, 손·신발) 및 환복(방역복 착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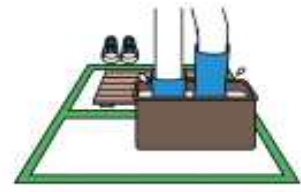
기본 방역조치



축사 내·외부 소독



바닥에 떨어진 사료 제거



축사 출입 시 신발 소독(축사전용 신발 쓰기)

※ 이외에도 **백신** 올바른 백신접종 **방역** 소독차량, 모기 등 럼피스킨 매개곤충 방제 **신복** 발판소독조 소독제 주기적 교체 등을 지켜주세요

럼피스킨 임상증상 및 신고 방법



좌측부와 생식기에 다수의 피부결절
(출처:FAO Animal Production and Health)



콧잔등(자)과 입술(우)에 궤양성 병변
(출처:FAO Animal Production and Health)



유두에 궤양성 병변
(출처:FAO Animal Production and Health)



콧잔등 다수의 피부 결절
(23.11.16, 충남 부여)



안면부 다수의 피부 결절
(23.11.6, 충남 당진)



복부 및 등통 다수의 결절
(23.10.31, 전남 신안)



다리 다수의 결절 및 궤양
(23.10.20, 충남 당진)



좌측부 다수의 결절 및 궤양
(23.11.11, 충남 여천)

※ 임상 가축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8-9060(농림축산검역본부) 1588-4060(지방자치단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참고 6

전국 가축(牛본) 시장 현황

구 분		거래두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기 타
경 기 (7)	2021	14,429	안성 (2,4주)	수원(3주) 인천강화옹진 (2주)	양평축협 (1,3주)	이천 (마지막주) 파주연천 (2,4주) 평택축협 (3주)		
	2022	15,784						
	2023	12,932						
	2024	15,548						
	2025	15,037						
강 원 (9)	2021	17,564		인제(3주) 강릉(3주) 동해삼척태백 (2,4주)	고성(2주) 속초양양 (4주)	홍천 (매주)	춘천철원 (2,4주) 원주축협 (1,3주)	횡성 (2일, 12일, 22일)
	2022	15,469						
	2023	12,297						
	2024	13,979						
	2025	13,635						
충 북 (8)	2021	33,696	괴산증평 (1,3주)	음성(1주) 제천단양 (2,3,4주)	진천 (2,4주) 보은옥천영동 -옥천 (송아지:1,3주 큰소:2,4주)	충주 (2,3주) 보은옥천영동 -보은 (2,4주)	청주 (1,3주)	
	2022	33,064						
	2023	27,542						
	2024	32,833						
	2025	32,507						
충 남 (9)	2021	61,613	논산계룡 (송아지:2주 큰소:4주) 보령 (큰소:3주) 부여 (1,2,4주)	당진(1주) 예산 (송아지:3주 큰소:4주) 청양 (비육우:1,3주 송아지:2,4주) 홍성 (큰소:2주)	세종공주 (매주) 청양 (마지막주) 홍성 (송아지:2,3주)	부여 (1,3,4주) 서산태안 (2,3주) 예산 (송아지:1주)	보령 (송아지:1주) 세종공주 (2,4주)	
	2022	60,655						
	2023	49,552						
	2024	49,507						
	2025	51,910						
전 북 (9)	2021	46,906	고창부안 (매주)	전주김제완주 -완주 : 2주 전주김제완주 -김제 : 4주 순정-정읍 (매주)	익산군산 (2,4주)	남원 (1,3주)	순정-순창 (2,4주)	무진장 (3일, 18일)
	2022	45,762						
	2023	40,823	임실 (1,3주)					
	2024	50,371						
	2025	44,244						
전 남 (15)	2021	149,039	순천광양 (매주) 영암 (매주 + 송아지:2,4주)	보성(매주) 함평(매주)	곡성(매주) 영광(매주) 장흥(매주)	고흥(매주) 장성(매주) 해남진도 (매주)	강진완도 (매주) 나주(매주) 장성(3주)	담양 (매주 일요일) 목포무안신안 (매주 일요일) 화순 (2,4주 토요일)
	2022	153,334						
	2023	148,892						
	2024	164,046						
	2025	148,808						
경 북 (14)	2021	113,801	경주(1주) 영주(매주)	상주 (1,2,3,4주) 영천(매주)	고령성주 (큰소:2주 송아지:3주) 문경(1,3주) 안동봉화 (1,2,3,4주) 의성(매주)	구미칠곡 (큰소:2,4주) 송아지:1,3주) 포항 (2,4주)	김천 (큰소:1,3주) 송아지:2,4주) 영덕울진 (2,4주) 예천(매주) 청도(3주)	
	2022	111,295						
	2023	97,578						
	2024	100,535						
	2025	108,628						
경 남 (14)	2021	66,723	의령 (2,4주) 함양산청 (3주)	거창 (큰소:2주 송아지:1,3주) 김해 (3주) 함양산청 (1,2,4주)	창녕 (1,2주) 함안 (2,4주)	밀양 (등복우:2주, 일반우:4주) 사천(2주) 진주(4주) 합천 (큰소:1주 송아지:2,4주)	고성 (송아지:1,3주) 남해 (2,4주) 하동 (1,3주)	고성 (큰소:2,4주 토요일) 사천 (송아지:1주 토요일) 진주 (2주 토요일) 울산 (2,7,12,17,22,27일)
	2022	65,053						
	2023	54,846						
	2024	61,507						
	2025	58,541						
제 주 (2)	2021	2,127						서귀포 (15일) 제주 (2일, 1월은 5일)
	2022	1,767						
	2023	1,270						
	2024	1,501						
	2025	1,694						

※ 가축시장 개장일 변경 多(일자→요일별)로 기준 변경(2019~)